일본과 호주의 보육정책동향

徐文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는 1995~1997년간 『보육사업 확충 3개년계획』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보육의 질, 행정체계,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식 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보육의 다양화와 보육소의 다기능화를 추구하는 일본과 인증제도(認證制度)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 호주의 보육정책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 보육정책 방향의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1.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

1990년대 일본의 보육정책은 소자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육정책으로 특징지워진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전후부흥기, 고도성장기, 저성장기로 구별되는 일본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및 이에 따른 노동 및 가족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소극적 정책→적극적 정책→소극적 정책으로의 회귀로 보육정책이 변화되어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금후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엔젤 플랜: Angel Plan)』, 그리고 이에 의한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 및 특별 보육사업의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등으로 일본 보육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가. 일본의 보육현황

1) 보육의 정의

보육소는 보육을 결(缺)한 영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데, 아동의 입소조건은 부모의 결손, 노동으로 인한 부재 및 간병 등에 의한 보육 결여시와 이 외에 화재, 풍수해,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한 거택복귀를 위해 또는 시(市)·정(町)·촌(村)에서 보육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육에 결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다.

2) 보육시설 종류

보육시설은 인가 여부에 따라 인가 및 인가외 보육소로 구분되는데 인가보육소 중 공립보육소는 시·정·촌이 설치하며, 사립보육소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도(道)·도(都)·부(府)·현(縣)지사의 인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공립보육소의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인가외 보육소로는 사업시설내 보육소, 벽지보육소, 보호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역(驛)에다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역형보육소가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베이비호텔(Baby Hotel)이 있다. 보육자의 집에서 보육하는 가정보육도 인가외 시설에 포함된다. 인가외 시설에 대해서도 후생성(厚生省) 장관이 도도부현지사와 함께 보고 징수 및 간섭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사업의 정지 및 폐쇄 명령을 할 수도 있다. 이 외에 베이비시터가 있고, 최근에는 여성단체 및 노동성이 주축이 된 공공성을 띤 재택 및 방문보육이 추진되고 있다.

3) 보육시설 및 이용 현황

가) 인가보육시설

인가보육소는 1997년 4월 기준으로 22,401개이고, 이 중 공립보육소가 13,074개로 58.4%, 사립보육소가 9,327개소로 41.6%를 차지한다. 인가보육소 이용아동수는 1997년 4월 현재 164만 3천여 명이고, 이는 정원에 대하여 85.8%에 해당된다. 정원 대비 입소아동비율은 1980년까지만 해도 9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1990년 이후 80%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도시를 중심으로는 보육소 대기자수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1997년 4월 현재 4만명이 대기 상태인데, 특히 0세아는 입소 아동의 10% 이상이 대기 상태이다. 이는 보육소의 지역분포 및 저연령 아동의 보육수요에 의한 것으로, 보육소에 대하여 획일적인 규제와 기준을 완화하고 탄력적 운영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취학전 아동의 약 21.2%가 보육소를, 23%는 유치원을, 55.8%는 가정 및 기타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표 1. 취학전 아동의 시설 이용 백분율

	보육소	기타	유치원	전체	아동수(천명)
0세	4.7	95.3	-	100.0	1,201
1~2세	17.1	82.9	-	100.0	2,372
3세	31.8	39.0	29.2	100.0	1,199
4세 이상	26.7	25.3	48.0	100.0	2,997
전 체	21.2	55.8	23.0	100.0	7,769

자료: 일본 후생성, 『후생백서』, 1998.

나) 인가외 보육소

1998년 1월 현재 비인가 사업시설은 8,262개소이다. 이 중에는 사업소내 보육시설 3,561개소 및 베이비호텔 649개소가 포함된다. 비인가시설 이용아동은 약 23만명으로 추정된다. 가정보육시설은 1997년 현재 137개 시·정·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 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다)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는 주로 베이비시터회사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1998년 1월 현재 133개 회사가 전국 베이비시터협회에 가입되어 있고, 1년간 약 23,000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33.6%가 전업주부로 취업모 이외에도 일반 주부가 출산 또는 질병 등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 비용은 시간당 1,500~2,000엔이며, 보육제도상 보육소나 유치원에 데려오고 데려다 주기 위하여 베이비시터를 활용하는 이중보육이 문제로 자주 논의되고 있다.

라) 공공성 민간보육 네트워크

이 외에 공공의 성격을 띤 저렴한 비용의 재택 및 방문보육이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스쿠(エスク)와 훼밀리서포트센터(Family Support Center)이다. 에스쿠는 1973년 3월에 영유아가 사망하는 보육시설 화재사고 이후 뜻있는 여성들이 모여서 개척자적인 정신에서 시작한 비영리 보육자 네트워크로 1997년 현재 37개 현(縣)에 조직되어 있고, 이용자의 상당수가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취업모이다. 훼밀리서포트센터는 노동성에서 1994년에 인구 5만 이상인 시·정·촌에 설치하여 아동을 맡기고자 하는 가구와 맡는 가정을 중개

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네트워크이다. 1997년 12월 현재 24개시에 설치되어 있다.

나. 엔젤플랜 및 긴급보육대책 5개년사업

1) 추진배경 및 기본시책

일본의 보육정책은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급격한 출산력의 감소에 의한 소자녀시대의 도래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1990년 합계출산율이 1.57을 기록하는데 정부는 이와 같은 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만혼화, 여성취업의 증가, 자녀 양육지원의 불충분에 따른 가정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대도시 주택사정의 어려움과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증대 등 자녀에 대한 심리적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출산력이 낮아지고, 또한 맞벌이부부 세대의 증가로 가정의 양육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인간관계가 희박하여지는 등 자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건전한 자녀의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정부, 기업 및 지역사회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1990년부터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문교, 후생, 노동, 건설 4대신의 합의 형태로 『금후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엔젤 플랜)』를 제시하게 된다. 출산과 육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을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표 2. 엔젤플랜의 기본적 방향

기본적 시점	시책의 분야	중점시책
• 안심하고 출산,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가정의 자녀양육을 사회가 협력하여 지원 • 자녀양육지원 시책에서 자녀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	자녀양육과 일의 양립지원	육아휴직급부의 실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충실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지원	지역자녀양육지원서비스의 확충
	자녀양육관련 주택 등 생활환경의 실현	여유 있는 주택의 정비
	여유있는 교육의 실현과 건전 육성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선
	자녀양육비용의 절감	육영장학사업의 충실

자료: 일본 전국보육협의회 편, 『보육연보』, 1995.

2)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 및 특별 보육사업

후생성에서는 엔절플랜의 기본방침에 따라 우선 1995~1999년의 5개년 동안 추진해야 할 사업을 계획·수립하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에는 보육대책에 충실하고, 다기능화에 따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에 알맞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민간보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제도를 개선하고, 방과후 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가정상담기능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한다는 기본 원칙을 두고 있다.

긴급보육대책 5개년사업 내용 및 목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저연령아(0~2세아) 보육의 촉진은 0세아 지정보육소 등을 확대하여 보육소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입소 희망 저연령아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혜아동수를 1994년 45만에서 1999년 60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② 연장보육은 오후 6시 이후의 보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4년 2,230개를 1999년 7,000개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1997년도 특별사업계획에 의하면 6시부터 12시까지의 연장을 1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의 4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동경 30구와 인구 30만 이상 시는 2개 보육소 중 1개, 그 외 지역은 4개 보육소 중 1개 보육소를 확보).

③ 일시적 보호는 가정에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4년 450개를 1999년 3,000개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동경 30구와 인구 30만 이상 시는 2개 보육소 중 1개, 그 외 지역은 10개 보육소 중 1개 확보).

④ 0세아 건강지원 주간서비스는 회복기 등에 있는 0세 아동을 맡아 보육하는 사업으로 1994년 30개소를 1999년 500개소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⑤ 방과후의 아동을 건전 육성하기 위하여 소학교 저학년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1994년 4,520개소를 1999년 9,000개소로 확대할 목표를 잡고 있다. 저학년 아동의 약 10%를 방과후 건전육성 사업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수용한다는 목표이다.

⑥ 다기능화 보육소의 정비는 보육소가 다양한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설비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15,000개의 보육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⑦ 보육소 병설 또는 보육소 공동으로 지역자녀 양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보육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촌에 1개소를 목표로 1994년 236개를 1999년 3,000개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⑧ 이 외에 보육소 인적 배치 기준의 충실, 유아나 다자녀세대의 보육료 경감, 모자보건의료체제의 충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특별보육사업의 성과

이와 같은 긴급보육대책 등 5개년사업에 근거하여 보육관련 사업들이 특별보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5년부터 종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표 3. 특별보육실시 현황(1997년)

(단위: 개소, %)

	1996[1]		1997[2]					
			공립		사립		전체	
유아(乳兒)지정보육소	7,850	35.0	2,972	22.7	5,618	60.2	8,590	38.3
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사업	-	-	737	5.6	2,704	29.0	3,441	15.4
일시적 보호	524	2.3	130	1.0	520	5.6	650	2.9
장애아보육	4,843	21.6	3,268	25.0	2,184	23.4	5,452	24.3
출산 및 육아휴가 직후 입소예약모델사업	415	1.8	121	0.9	448	4.8	569	2.5
개소시간 연장촉진사업	3,426	15.3	1,566	12.0	2,875	30.8	4,441	19.8
저연령아 보육촉진사업	1,047	4.7	395	3.0	1,001	10.7	1,396	6.2
지역 양육지원서비스사업	288	1.3	211	1.6	217	2.3	428	1.9

주: %는 전체 보육소수(1996년 22,441개소, 1997년 22,401개소: 공립 13,074개소, 사립 9,327개소)에 대한 비율임.

자료: 1) 前田正子, 「보육의 다양화」, 『사회보장연구』, 제34호, 1998, 봄.
2) 일본 후생성, 『후생백서』, 1998.

〈표 3〉은 1996년 및 1997년도 특별보육실시 현황을 나타낸다. 공립보다는 민간보육소에서 보다 활발한 특별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1960년대 영아보육사업을 시작으로 그 동안 개별적 특별보육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개별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보육정책의 변화

1) 이용자의 보육소 선택권 보장

1997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제도상 보육소의 선택권이 이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입소절차상의 제도가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인가보육소는 입소 희망하는 경우 시·정·촌에 입소를 희망하면 시·정·촌에서는 이를 검토, 결정하여 입소조치를 취하는 행정처분의 형태였다. 즉, 신청자의 관여없이 일정 조치기준에 의해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고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보육이 결손된 영유아의 보호자가 시·정·촌 및 보육소가 제공하는 보육정보에 기초하여 희망하는 보육소를 시·정·촌에 신청하고, 시·정·촌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육을 행하되, 정원이 넘는 보육소는 입소희망 아동을 대상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보육소 선택권을 인정하고 보육소는 이용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보육소의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보육소 병설 또는 보육소 공동으로 지역자녀 양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보육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보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소의 다기능화뿐 아니라, 보육시설의 이용자를 아동에서 보호자로 확대하고 있다.

3) 보육료 부담방식의 변경

일본은 전통적으로 보육료는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보육소 입소시 첨부한 서류에 나타난 전년도의 세대별 소득세 과세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육료를 부담케 하는 세액전환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1997년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책정하던 것을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정한다고 개정하고,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이 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서서히 균등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있다. 단, 저소득층의 급격한 부담 변화를 피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는 1987년부터 간소화하여 시행되어 오던 10등급 분류방식을 7등급으로 구분을 간소화하고, 보육단가에 있어서도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차이를 둔다는 차원에서 3세 미만아를 0세와 1, 2세아로 구별하여 책정하였다.

이처럼 변경된 배경에는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 보육소 사용의 일반화 및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공평성 문제 등이 고려된 것이다. 또한 보육아동의 경제적 특성 변화도 고려되었다. 시설이 부족하여 입소가 제한적일 때는 생보자와 소득세 비과세대상의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낮아져서 1994년에는 보육소 입소아동의 3/4 이상이 소득과세대상자의 자녀로 조사되었다.

2. 호주의 보육정책 동향

1990년대 호주 보육정책의 특징은 보육시설 인증제도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91년에는 1980년대부터 실시하여 온 일정 소득 이하의 공공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아동보육 보조(Childcare Assitance)를 민간 및 영리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확대하고, 1994년부터는 아동보육 환불(Childcare Cash Rebate)제도를 도입하여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아동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1993년에 국가아동보육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를 설립하고 1994년부터 질 개선 및 인증제도(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호주 연방정부는 1996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에 기초한 보육센터의 운영자금을 중단하고 1997년 하반기부터 보육공급 확대의 속도를 늦추었으며, 1998년 1월부터 아동보육 보조를 취업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두는 등의 지원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

가. 호주의 보육현황

1) 호주 보육의 기본원칙

호주 연방정부가 보육을 지원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모의 아동보육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일과 관련되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모의 범위는 현재 취업중인 부모 이 외에 직업훈련, 취업을 위해 연구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포함한다.

2) 보육형태

호주의 공식적인 보육형태는 크게 종일보육센터(Long Day Care Center), 가정보육(Family Day Care Schemes), 학교밖 보육(Outside of School Hours Care), 일시보육서비스(Occasional Care Service)로 구분된다. 종일보육센터는 보편화된 보육형태로서 원칙적으로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며 규모는 35~40명 정도이다. 연방정부의 아동보육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질 개선 및 공인시스템(Quality Improv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탄력성 있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보육은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것으

로 중앙에 조정기구(Central Coordination Unit)를 두고 여기를 통하여 모든 서비스 과정이 지원되고 유지되는 형태이다. 또한 학교밖 보육 서비스는 주로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것으로, 보육유형은 아침 7시부터 학교시작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방학기간 보육의 3가지로 구분된다. 일시보육서비스는 입학전 아동에게 짧은 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부모가 진료 등 개인적인 이유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하는 다기능 센터(Multifunctional Centers), 원주민을 위한 다기능 원주민 아동서비스(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 Service) 및 이동서비스(Mobile Services)가 있다.

3) 보육시설 및 이용 현황

보육시설은 1980년대 후반 이래 꾸준히 확충되어 왔다. 1998년 현재 연방정부 지원의 보육인가 정원(Places)은 334,200명이고, 이용 아동수는 600,000명에 이르고 있다. 보육시설 운영주체를 보면 현재 종일보육센터의 64% 가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36%가 비영리 시설이다. 가정보육 중앙조정본부, 일시보육, 학교밖 보육 등은 공공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다.

보육을 보육유형별로 비교하면 1996년 현재 호주의 12세 미만의 아동보육은 20.1%가 공식적인 보육에 의한 것이고, 36.4%가 형제자매, 친척, 친척 외 사람 등 비공식적인 보육제공자에 의한 것이다. 즉, 48.4%의 아동이 부모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보육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점차 공식적인 보육의 비율은 증가하고 비공식적 형태의 보육은 감소하고 있다.

나. 호주의 보육재정 및 보육료 지원 체계

호주정부는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더불어 저소득가정을 위한 아동보육 보조금을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보육관련 예산의 90%가 연방정부의 예산이다.

아동보육료에 대한 현금 지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취업과 관련한 저소득층 및 중류 가정의 아동에 대한 아동보육보조(Childcare Assistance)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보육시설 이용 가정에 대한 아동보육 현금 환불(Childcare Cash Rebate)제도이다.

아동보육보조의 조건은 저소득 및 중산층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이

어야 하며, 정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의 이용자여야 한다. 아동보육보조는 자산조사에 기초를 둔 것으로 사회보장부의 일원화된 전달체계기구인 센터링크(Centerlink)가 가족소득 및 재산 평가를 실시하여 개별적인 보조 비율을 정한다. 종일보육센터, 가정보육, 수시보육서비스, 다기능 센터, 다기능 원주민 아동서비스 이용자에게 종일보육센터와 같은 기준으로 보육료를 보조하고, 학교밖 보육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조금은 가정을 대신하여 보육시설에서 수령한다. 1997년 하반기부터는 가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과 관련되지 않은 보육에 대해서는 주당 20시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아동양육 환불은 취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보육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도 제공된다. 환불 대상아동은 13세 미만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17세 미만까지 적용되며,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여야 한다. 보육시설은 유형에

표 4. 12세 미만 전체아동에 대한 각 부문별 보육이용률

(단위: %, 명)

		1990년	1993년	1996년
공식부문	학교밖 보육	1.5	2.8	3.6
	종일보육	3.8	4.8	5.7
	가정보육	2.6	2.6	3.1
	임시보육	-	1.6	1.7
	기타	1.9	1.0	0.7
	유치원	8.9	7.7	6.5
	소계	17.7	19.3	20.1
비공식부문	형제자매	6.5	5.2	5.3
	친척	26.0	22.9	23.4
	친척 외	13.7	12.6	10.2
	소계	42.3	37.8	36.4
합 계 (아 동 수)		51.6 (1,548,500)	48.8 (1,504,900)	48.4 (1,501,800)
전체아동수		3,003,700	3,085,900	3,102,800

주: 1990년도 임시보육은 기타에 포함됨.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hild Care Australia*, Cat No. 4402.0, Canberra: ABS, March, 1996.

상관없이 메디케어(Medicare)에 아동보육자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된다.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고소득자에게는 적용비율이 낮다. 이는 종전에는 건강보험위원회(Health Insurance Commission)가 메디케어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여 지불하였으나, 1998년 이후 센터링크를 통하여 개인 은행 계좌로 지급된다.

매년 300,000 가족이 아동보육료 보조를 받고 있고, 280,000 가족이 아동보육료 환불을 받는데 정부지원금 보조금 산출방법은 주당 보육료 중에서 20불을 공제하고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데 정부의 지원금은 〈표 5〉와 같다.

표 5. 소득 및 보육료별 정부지원금

(단위: 호주 불)

조건 및 보육료			주당 정부지원금		
연 소득	자 녀	주당 보육비용	아동보육 보조	아동보육 환불	총 정부지원금
27,196	미취학 한 자녀	115	95	0	95.0(100.0)
36,400	미취학 한 자녀	150	72.4	17.3	89.7(59.8)
36,400	미취학 한 자녀	60	29	3.3	32.3(53.8)
46,800	미취학 두 자녀	300	126.3	46.2	172.5(57.5)
36,400	취학 한 자녀	60	24.6	4.7	29.3(48.5)

주: ( )는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비율임.

자료: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Family Services, *Your Guide to Chilc Care*(인터넷), 1998.

또한 호주는 세제를 통해서도 보육을 일부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갖춘 기업이나 외부 보육센터 이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준다. 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 호주 보육의 질 관리 제도

호주는 아동보육의 질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나는 아동보육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인증제도이다

아동보육기준은 최근에 1996년 종일보육, 1997년 가정보육 및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밖 보육에 대하여 연방 및 주정부가 동의하는 국가 기준이 설정되었다. 물리적 환경, 보건 안전, 아동 교사 비율, 교사의 자격, 프로그램 활동 등 법적 규제 및 재정지원 지침으로 각 주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일정치

않으나 몇몇 주에서는 이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가 1993년에 설립한 국가 아동보육 공인위원회가 관리하는 질 개선 및 공인제도를 통하여 공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1994년 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아동보육 원조를 받는 모든 시설은 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질 개선 및 공인 시스템은 교사 및 아동간의 상호작용, 프로그램, 영양·보건·안전의 실천, 센터 관리 및 인력개발 4가지 측면의 52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절차는 먼저 각 시설에서는 시설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체 위원회를 설립하여 52개 항목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국가인증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제공인 여부 및 인증 기간을 결정한다.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 할 때는 연방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제도는 엄격하게 실시되어 1997년 6월을 기준으로 모두 4,134개 센터중 3082센터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는데 이 중에서 총 91%의 시설이 1~3년의 인증을 다시 받았고, 9%는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 인증을 받은 91% 시설도 42.6%만이 3년의 인증을 받았고, 37.6%는 1년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기타 관련 현안

첫째로 최근에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차이가 모호해지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정부의 아동보육보조(Childcare Assistance)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보육시설에서는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여 유치원에서와 같은 아동 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 교육을 실시한다. 1995년 8월 현재 약 55%의 보육센터가 유치원 교사에 의한 아동발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은 아동보육 수요에 맞추고 보육시설은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여, 상호 기능을 보완함에 따라 둘은 재정적으로 경쟁자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두 번째로, 호주 정부는 아동의 낮은 예방접종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환불과 예방접종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1998년 4월부터 환불에 등록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 아닌 경우에는 그 이유가 적절하여야 한다.